

#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87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2. 9.

발의자 : 이학영 · 최인호 · 민병두

남인순 · 윤호중 · 이원욱

이재정 · 변재일 · 이춘석

이용득 · 최운열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공적 기능에 비추어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에 대한 해임기준 등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으므로 해임사유에 직무 수행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, 비위를 저지른 집행간부의 의 원면직을 제한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32조제1항, 제72조 신설).

또한 정부가 「국가공무원법」 개정(2013.12.12. 시행)에 따라 실적 주의가 적용되는 공무원을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과 현행법에서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상임위원의 공무원 구분을 종전의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4항 및 제20조제3항).

##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정무직(政務職)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”를 “정무직으로 하고”로, “별정직공무원으로”를 “일반직공무원으로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”로 한다.

제20조제3항 중 “별정직공무원으로”를 “일반직공무원으로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”로 한다.

제32조제1항제4호 중 “위반한”을 “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”으로 한다.

제7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2조(의원면직의 제한) 제29조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 등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집행간부 등이 검찰,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

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4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금융위원회의 구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<u>정무직</u>(政務職)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, 제1항제5호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<u>별정직</u> 공무원으로 임명하며, 제1항제6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금융위원회의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정무직으로</u> 하고-----</p> <p>----- 일반직공무원으로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-----.</p>
<p>⑤ · ⑥ (생략)</p> <p>제20조(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) 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<u>별정직</u> 공무원으로 보(補)한다.</p>	<p>⑤ ·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0조(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 일반직공무원으로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-----.</p>
<p>④ ~ ⑥ (생략)</p> <p>제32조(원장 등의 해임) ① 원장 및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</p>	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2조(원장 등의 해임) ① -----</p>

<p>통령이 해임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<u>위반한</u> 경우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</p> <p>----- <u>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-----</u>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72조(의원면직의 제한) 제29조</u></p> <p><u>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 등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집행간부 등이 검찰,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